

■ 목 차

■ 소식 ■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 발간 2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 개최 3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국무원, 「외자유치 추진 대책 관련 통지」 발표 5
 최고인민법원, 회사법 관련 네 번째 사법해석 공표 5
 국가외국인전문가국과 공안부, 「경외비정부조직(NGO) 외국인 직원의 근무 허가 등에 관한 통지」 발표 6
[러시아] 러시아연방 국세청(FNS) 및 금융감시국(Rosfinmonitoring) 요청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정보 제공 의무 7
 채무자와 채무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자의 보충적 책임 규정 도입 7
 러시아연방 민법 개정안 7
 인터넷 메시저의 휴대폰 번호 인증 의무화 8
 러시아 환경부, 재활용 대상 포장재에 대한 환경세율 설정 8
[일본] 일본 정부, 「미래투자전략 2017」 각의결정 9

■ 해외업무 논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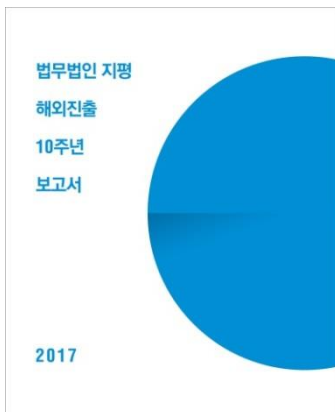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12
[베트남] 베트남 상장 절차 및 요건 15
[러시아] 미국 제재 통합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러시아를 중심으로) 21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주)동방선기를 대리하여 중국 내 자회사인 대련동방선기 유한공사의 지분 매각 관련 자문 31
 KDB산업은행을 대리하여 하이난성 하이커우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 투자 자문 31
 한국 화학기업의 중국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자문 32
 한국 투자업체의 상해대표처 설립 관련 자문 33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의 지분 매각 관련 자문 33
 한국 운송업체의 중국 소송 관련 자문 34
[베트남] 한화테크윈(주)를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 항공기 엔진부품 공장 설립 관련 자문 35
 NHN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자문 35

■ 소식 ■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지평 해외진출의 현황과 성과를 담고 있으며 Highlights, 지평의 해외업무, 지평의 해외사무소, 지평의 Global Legal Network, 지평의 기타 해외지역 업무, 지평의 Global Vis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PDF\)](#)

[관련 기사]

- [국토일보 -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 발간\(2017. 9. 6.\)](#)
- [세계일보-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 펴내\(2017. 9. 6.\)](#)

■ 소식 ■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9월 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100여 명의 기업 임직원들을 초청하여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의 기념사에 이어, 해외 9개 지역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무소장들과 서울 본사 해외업무팀 소속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구성된 테이블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분쟁팀장인 김진희 외국변호사가 ‘국제 분쟁 관리의 ABC’를,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인 권용숙 변호사가 ‘인도네시아 투자 법제 및 주요 법률 이슈’를, 이란 사무소장인 배지영 변호사가 ‘이란 투자 관련 최근 동향 및 법적 이슈’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세계일보 -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기념행사’ 성료(2017. 9. 8.)
-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 성황리 개최(2017. 9. 9.)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년’ 고객 정보마당(2017. 9. 11.)

[관련 사진]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국무원, 「외자유치 추진 대책 관련 통지」 발표

2017년 8월 16일, 국무원은 「외자유치 추진 대책 관련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는 외자 진입 제한 축소, 재정 및 세무 관련 지원 정책 마련, 국가급 개발구의 종합적인 투자환경 개선 등 5개 방면, 총 22개의 외자 추진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지'에 의하면 외자 진입 시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를 병행하는 관리제도의 전면 시행, 특수용도차량 및 신재생에너지차량의 제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영역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통지'에 의하면 외국인의 중국 경내에서의 확장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인이 중국 거주자 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익으로 장려류로 분류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과세이연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 과실송금,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보완 등 정책도 시사하였습니다. '통지'는 거시적인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시행을 위하여서는 별도의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통지에서는 이례적으로 각 대책별로 담당 정부 부서를 특정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각 관련 시행 규정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회사법 관련 네 번째 사법해석 공표

2017년 8월 25일,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4)」(이하, '회사법 사법해석 4')를 공표하였고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회사법 사법해석 4'는 결의 효력 하자 관련 소송 제도 보완, 주주의 법정 알 권리에 대한 보호 강화, 주주의 이익배당권에 대한 사법구제 제도 보완,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와 손해 구제에 대한 규범화, 주주대표소송제도 보완을 주축으로 크게 5개 이슈와 관련하여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가외국인전문가국과 공안부, 「경외비정부조직(NGO) 외국인 직원의 근무 허가 등에 관한 통지」 발표

2017년 7월 27일, 국가외국인전문가국과 공안부는 연합하여 「경외비정부조직(NGO) 외국인 직원의 근무 허가 등에 관한 통지」(이하, 'NGO 노동 허가통지')를 발표하였고 해당 통지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통지에 의하면, 외국고급인력 기준에 부합됨을 전제로 외국 NGO중국 대표기관의 수석대표는 최장 5년의 근무기간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표기관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아 일시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외국인 책임자 및 주요 직원의 근무기간은 승인받은 활동기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러시아 ■

러시아연방 국세청(FNS) 및 금융감시국(Rosfinmonitoring) 요청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정보 제공 의무

[출처 : 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정보 제공 규칙 승인에 관한 정부령(제913호) 2017. 7. 31.]

동 정부령은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른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 목록, 요청서 작성 및 발송 절차 요건, 답변서 서식, 제출 절차 및 기한, (이전 제출 정보 오류 발견 시) 수정 정보 제출 절차 및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정부령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 시행법규 작성 및 승인이 되도록 러시아연방 국세청과 금융감시국에 해당 업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채무자와 채무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자의 보충적 책임 규정 도입

[출처 : 지급불능(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및 행정위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6-FZ호) 2017. 7. 29.]

동 법률은 채무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이 완전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자는 채무자 채무에 대해 보충 책임을 부담합니다.

러시아연방 민법 개정안

[출처 : 러시아연방 민법 제1편, 제2편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12-FZ호) 2017. 7. 26.]
소비대차, 대출, 팩토링(Factoring), 은행 예금, 계좌 및 결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신규 약정 '조건부 공탁(에스크로(Escrow))'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개인간 소비대차 내용도 변경되어 이제는 10,000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개정 민법은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인터넷 메신저의 휴대폰 번호 인증 의무화

[출처 :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0.1조 및 제15.4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 241-FZ호) 2017. 7. 29.]

2018년 1월 1일부로 인터넷 메신저는 관할기관의 요청 접수되는 경우 24시간 이내 이용자의 메시지 교환을 제한해야 하며, 수신 메시지 자동 거부와 전송된 메시지의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입자 번호 인증 정보는 러시아 내에서만 보관해야 하며, 제3자 제공은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단, 법률로 정한 경우 제외함).

러시아 환경부, 재활용 대상 포장재에 대한 환경세율 설정

[출처 : 러시아연방 정부령(제284호, 제정 2016. 4. 9.) 개정에 관한 정부령안 2017. 8. 4.]

동 정부령안은 환경세율을 도입한 재활용 대상 포장재(금속, 이온체, 종이 및 판지, 유리, 목재 및 코르크, 섬유재)를 추가하였습니다. 최고세율은 섬유재(16,304루블/톤), 최저세율은 종이 및 판지(2,378루블/톤)이며, 이 외에도 기타 금속 완제품에 대한 세율(2,423루블/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일본 정부, 「미래투자전략 2017」 각의결정

일본 정부는 2017년 6월 9일 성장전략 「미래투자전략 2017」을 각의결정하였습니다. 위 내용 중 전략 분야에 대한 개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수명의 연장

가. 데이터 이용·활용기반 구축

- 현재 분산되어 있는 건강·의료·개호 데이터를 개인이 생애에 걸쳐 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2020년도부터 본격 가동)

나. 보험자·경영자에 의한 '개인의 행동변용 본격화'

- 보험자에 대한 예방 인센티브 강화 : 후기고령자 지원금의 가산·감산을 인상('+0.23%-▲ 0.048%' → '±10%' 등)
- 각 보험자의 노력상황(가입자의 건강상태·의료비·건강에 대한 투자상황 등) 가시화(성적표)와 경영자에 대한 통지. 건강경영에 의한 생산성 향상

다. 원격진료, AI개발·실용화

- 지역 의사 등에 의한 대면진료와 조합한 효과적·효율적 원격진료 촉진(차기 진료보수 개정에서 반영)
- AI개발·실용화 촉진(AI개발용 클라우드 환경의 정비·인증 등)
- AI를 사용한 의사 진료의 정확한 지원(차기 이후 진료보수 개정 등에서 반영을 목표로 함)

라. 자립지원으로 향한 과학적 개호의 실현

- 데이터 수집·분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2020년도 본격 운용개시를 목표로 함)
- 효과가 있는 자립지원의 촉진(차기 개호보수 개정에서 반영)

- 개호로봇 등 도입 촉진(차기 개호보수 개정에서 반영, 인원·설비기준 재검토)

마. 혁신적인 재생의료 등 제품 등의 창출 촉진, 의료·개호 국제전개 추진

2. 이동혁명의 실현

가. 세계에 앞선 실증

- 트럭의 대열주행 실현(2020년 고속도로(신토메이)에서 후속 무인트럭에서의 대열주행을 실현, 2022년 상업화를 목표로 함)
- 지역에 있어서 무인자동주행에 의한 이동서비스 실현(2020년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전국 10군데 이상 지역에서 공도 실증)
- 소형무인기(드론)에 의한 화물배송 실현(2020년대 도시부에서 본격화를 위해 보조자를 배치하지 않는 목시외비행에 관한 기체나 조종자 등의 요건 명확화)
- 안전운전 서포트차량의 제도 정비·보급 촉진(선진 안전기술기준 책정 등)

나. 데이터의 전략적 수집·활용, 협조영역의 확대

- 고정도3차원지도 작성(25cm 단위)을 위한 사양·구조 책정(2018년도 중)
- 5G의 실현·자동주행 등에 대한 활용(2020년까지 서비스 개시)
- 사이버공격 대응 차재 시큐리티 강화(안전성 평가 구조 등 공정표 책정)

다. 국제적인 제도 간 경쟁을 준비하는 제도 정비

- 고도 자동주행(레벨3 이상)을 위한 정부 전체의 제도 정비 방침 책정('시스템에 의한 운전'에 관한 안전기준, 도로교통법 등 규칙, 책임관계 등)

3. 서플라이체인 차세대화

Connected Industries : IoT 등에 의해 여러 가지를 네트워크화하여 고객이나 사회 과제해결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사회

가. 데이터 연계의 제도 정비

- '스마트보안'(IoT·데이터를 활용한 이상의 사전예지)에 대응하는 보안규칙 고도화
- 복수 사업자가 연계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나. 데이터 연계 선진사례 창출·전개

- 국내외 복수 기업의 데이터 연계 실증, 국제표준화
- 디지털화를 위한 모델구축(자동차·자동차부품부터 우선 개시)

4. 쾌적한 인프라·마을만들기**가. 인프라 정비·유지관리의 생산성 향상**

- 'i-Construction'의 대상확대(교량·터널 등, 중소기업·지자체), 공공공사의 3차원 데이터 오픈화(이용·활용규칙 책정)(2025년도까지 건설현장 생산성 20% 향상)
- 인프라 점검·재해 대응로봇의 개발촉진(로봇의 이용 장면에 따른 요구성능 설정 등)

5. FinTech**가. 오픈 이노베이션/캐슈레스화 추진, 챌린지 가속**

- 은행에 의한 오픈API¹ 추진
- 신용카드 데이터 이용에 관한 API 연계
- 새로운 결제서비스 창출(전자기록 채권의 발생·양도에 대한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저비용화 등)
- FinTech 실증실험 허브(가칭)를 통한 챌린지 용이화
- 해외 당국과 협력범위 확대, FinTech Summit 개최

[자료출처 : [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¹ API란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사양을 말합니다. API를 통한 연계에 따라 FinTech 사업자는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회사와 안전하게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법무법인 지평 임혜정 변호사)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이 지난 6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중국 발전과 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201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이번 지도목록')은 지난 2015년 개정 이후 2년 만에 다시 개정된 것으로서, 네거티브리스트가 최초로 도입되는 등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기존 지도목록')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지도목록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네거티브리스트' 최초 도입

기존 지도목록이 장려업종목록, 제한업종목록, 금지업종목록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지도목록은 크게 장려업종목록과 네거티브리스트(外商投資准入負面清單)로 이루어져 있고,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도목록에서는 장려업종 중에도 외자지분에 제한을 둔 업종들이 존재하였으나 이번 지도목록에서는 이러한 업종들은 일괄적으로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한편, 장려업종목록과 네거티브리스트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은 장려정책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투자 제한에 관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새롭게 장려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 감면 신청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국 국내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제한 또는 금지되는 업종은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다수 장려업종의 유지 및 스마트산업에 대한 투자 장려

이번 지도목록상 장려업종은 총 348개 업종으로 기존 지도목록상의 장려업종이 이번 개정 시에도 대부분 장려업종으로 유지된 반면(기존 지도목록에서 7개 업종 삭제, 6개 업종 추가),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은 총 63개 업종(제한업종 35개, 금지업종 28개)으로, 이는 기존 지도목록에서 장려업종 중 외자지분 제한이 있던 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이 총 93개이었던 것에 비하여 30개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 지도목록에 새롭게 장려업종으로 추가된 업종은 스마트 응급의학 설비 제조업, 수문관측센서 제조업, VR 및 AR 연구개발·제조업, 3D 프린팅 설비 관련 부품 연구개발·제조업, 수소충전소 건설·경영업, 도시주차설비 건설·경영업 등 총 6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중국제조 2025' 전략(중국 국무원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에 부합하는 스마트 산업에 해당합니다.

3. 제조업, 서비스업, 광업의 개방 확대 및 문화산업에 대한 제한 유지

이번 지도목록에서는 여러 제조업, 서비스업 광업 분야에 대한 외자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철도 교통설비 제조업, 해양공정장비 제조·수리업, 선박 저·중속 디젤엔진 및 크랭크축 제조업 등의 경우 이번 개정 시 장려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네거티브리스트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외자의 진입 제한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위 업종들 외에도 식용유지가공업, 쌀·밀가루·원당 가공업, 오토바이 제조업,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전지 제조업, 생물액체연료 생산업 등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외자 진입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완성차 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은 이번 지도목록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신용조사 및 등급평가 서비스, 도로 여객 운수, 외국선박화물 검수, 회계감사 등의 영역에서 외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광업 분야에서는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귀금속 탐사, 희귀금속 제련 등의 분야에서 외자 진입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기존 지도목록에서 금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출판업, 방송프로그램·영화·음반 제작업 등 문화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이번 지도목록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베트남 상장 절차 및 요건



(법무법인 지평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지 오래되고 베트남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현지 또는 역외 상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 진출 기업으로는 최초로 LS전선과 화승의 현지법인들이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베트남 거래소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 거래소 상장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4. 주식회사로의 전환

베트남 현지법인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의 법적 형태가 주식회사이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전전 유통될 수 있는 형태의 주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 방법을 취하여 3인 이상의 주주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① 이미 3인 이상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 또는 기존 지분의 매각 없이 주식회사로 전환 가능
- ② 새로운 투자자에게 지분을 발행하는 방안
- ③ 기발행 지분의 일부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
- ④ 위 세 가지 방안을 혼합하는 방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3인 이상의 주주를 확보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순서	구분	내용
1	전환 결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전환에 관한 결의를 합니다.
2	인허가 변경	유한책임회사는 기업등록증과 투자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인감 신고	전환 후 회사는 회사 형태 변경을 반영한 새로운 상호에 맞게 신규 인감을 제작하여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기업공개(공모, Initial Public Offering)

베트남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이 300명 이상의 주주(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 제외)에게 분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모가 필요합니다.

기업공개(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 증권위원회에 공모를 등록하는 당시 회계장부상으로 회사의 완납된 정관 자본금이 베트남화 100억 동 이상일 것
- ② 공모 등록 직전 영업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고, 공모 등록 연도까지 누적 손실이 없을 것
- ③ 주식 발행 계획 및 주식 발행 대금의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 ④ 증권사와 공모주간계약을 체결할 것

기업공개(공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구분	내용
1	기업공개(공모) 결의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기업공개(공모) 및 주식 발행 대금의 용도(신주 발행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결의를 합니다.

순서	구분	내용
2	주간계약 체결	증권사와 공모주간계약을 체결합니다.
3	증권위원회 등록	등록 신청 서류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신청서(표준양식) (ii) 투자설명서(표준양식) (iii) 회사 정관 (iv) 기업공개(공모)에 대한 회사 주주총회 결의서 (v) 최근 2개 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vi) 신주 인수 확약(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vii) 등록 신청을 승인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 (viii) 발행회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는 해당 기관의 작성확인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ix) 부동산, 광업 또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은 관련 서류 (x) 에스크로계좌 개설 은행의 확인서 (xi) 기업 등록 자료 (xii) 증권사와의 공모주간계약
4	증권위원회 인가	증권위원회는 보정 명령을 하지 않으면, 최종 등록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를 인가하고 공모등록증을 발급합니다.
5	고시	기업공개(공모) 등록증 발행일로부터 7일 내에 회사는 일간지에 3회 연속으로 공모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6	청약 등록 및 주금 납입	주식 청약자들은 청약 등록을 할 때에 해당 주금을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모 절차 완료 때까지 예치됩니다.
7	주식 배정 및 교부	회사는 공모 등록증 발행일로부터 90일 내에 청약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청약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주권을 교부합니다.
8	결과 보고	청약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 또는 인수인은 공모 결과를 주금 납입 확인서와 함께 증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상장

호치민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 상장 등록일 현재 회계장부상으로 완납된 정관 자본금이 베트남화 1,200억 동 이상(하노이 증권 거래소는 200억 동 이상)일 것
- ② 상장 등록 시점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었을 것, 최근 영업연도의 세후 자기자본이익율(ROE)이 5% 이상이고 상장 등록 직전 2개 연도 간 영업이익이 흑자일 것, 1년을 초과하여 연체된 채무가 없을 것, 상장 등록 연도 기준 누적 손실이 없을 것, 회계 및 재무 보고에 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 ③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사장, 부사장, 회계장,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들의 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공시할 것
- ④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이 300명 이상의 주주(주요 주주 제외)에게 분산되어 있을 것
- ⑤ 회사의 임원(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사장, 부사장, 회계장)에 대한 임명권한을 가진 주주와 임원의 특수관계인인 주요 주주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 주식 전부를 처분하지 않고, 이후 6개월간 보유 주식의 50%를 처분하지 않을 것
- ⑥ 법에 따라 상장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것

상장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구분	내용
1	상장 결의	이사회가 상장 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재무제표 감사	증권위원회가 승인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를 감사받아야 합니다.
3	주간사 선정	회사는 주간사(증권사 등)를 선정하여 주간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순서	구분	내용
4	신청서 제출	<p>증권거래소에 상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신청서 (ii) 상장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서 (iii) 주주명부(상장 신청서 제출일 1개월 전 작성) (iv) 주주명부의 주요 내용 요약본 (v) 내부자(Insiders), 주요 주주, 공시 담당자, 전략적 투자자의 명단 및 내부자(Insiders), 주요 주주, 공시 담당자의 특수관계인 명단 (vi) 투자설명서 (vii) 회사의 임원(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사장, 부사장, 회계장)에 대한 임명권한을 가진 주주와 임원의 특수관계인인 주요 주주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 주식 전부를 처분하지 않고, 이후 6개월간 보유 주식의 50%를 처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 (viii)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주주 비율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서(해당 사항 있는 경우에 한함) (ix) 주간사계약 (x) 대상회사의 주식이 등록·예탁되었음을 확인하는 예탁원의 확인서 (xi) 사업 인허가 사본(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함) (xii) 공시 담당 임원에 대한 임명서한 (xiii) 공시에 대한 내부 절차 (xiv) 상장 등록 시점까지의 증자 내역 (xv) 상장 등록 시점까지의 감자 내역 (xvi) 상장계약(증권거래소 양식) (xvii) 내부자 및 공시 담당자의 이력서 (xviii)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사장, 부사장, 회계장,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들의 회사에 대한 채무 공시 자료 (xix) 회사가 1년을 초과하여 연체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xx) 매매거래 시작일 등록 양식

순서	구분	내용
		증권거래소는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회신합니다.
5	상장 절차 완료	<p>증권거래소의 가인가를 받은 후 회사는 예탁원(VSD)에 등록하고 증권거래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본인가일로부터 7일 내에 전국 일간지, 본점 소재지의 지역 일간지 또는 증권거래소 게시판에 3회 연속 상장 사실을 고시할 것 (ii) 본인가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상장 비용을 납부할 것 (iii) 매매거래 시작일을 등록할 것 (iv) 증권거래소 홍보실과 협의하여 상장 기념식을 할 것

■ 해외업무 논단 - 러시아 ■

미국 제재 통합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러시아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지평 [이승민 선임 외국변호사\(러시아\) · 모스크바 사무소장](#))

1.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 통합법 시행

미국 하원은 2017년 7월 25일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 (이하 '본건 제재안')을 결의하였고, 미국 상원은 2017년 7월 27일 본건 제재안을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제재안은 2017년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 공식 서명 후 법률로서 시행되었습니다.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이하 '제재 통합법')은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를 내용으로 하며, 특히 러시아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재 통합법에 반영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제재 통합법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

① 대통령령 제13662호 개정을 통한 제재 강화

제재 통합법은 금융서비스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 관한 기존의 대러시아 제재(대통령령 제13662호, Executive Order 13662) 내용을 확인하는 것 외에 일부 개정을 통해 추가 제재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 산업분야별 제재대상자 목록(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 List)(이하 'SSI목록')의 확대

기존 대통령령 제13662호에 의해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행정명령(Directive)을 통해 러시아의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 에너지(Energy), 금속(Metals), 광업(Mining), 엔지니어링(Engineering), 방위(Defense) 분야의 제재대상자를 선정하고 SSI 목록²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재 통합법으로 인해 러시아 국유기업이 운영하는 철도(Railway) 분야를 추가하여, 제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미국 재무장관은 철도 분야의 제재대상자를 선정하여, SSI 목록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금융서비스 분야 기관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기존 대통령령 제13662호는 OFAC Directive 1을 통해 ① 미국인³이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금융서비스 기관과 i) 신규 채무 거래, ii) 자금 제공, iii) 신규 지분을 취득하는 하는 경우 또는 거래 주체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거래가 ②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제재 대상 거래로 인식되었습니다. 단, OFAC 라이선스⁴를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² 2017년 6월 20일 기준 278개 기업

³ 대통령령 제13662호 제6조 정의 조항에 따르면, 미국인(US Persons)이란 ① 미국시민, 미국 영주권자, ② 미국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미국 관할권 내 설립된 기업(해당 기업의 해외지점 포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미국인은 반드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⁴ OFAC은 법률에 의해 금지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즉, OFAC의 승인에 의해 라이선스가 발급된 경우 미국인이 SSI 목록에 포함된 제재대상자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OFAC에 제출하여야 하며, OFAC의 심사를 거쳐 발급가능 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한편, 제재 통합법은 러시아 금융기관과의 채권, 채무 거래와 관련한 거래 주체를 ① 미국인 또는 ② 미국 내 소재자(Persons within the United States)⁵ (단, OFAC 라이선스 취득자 예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재 통합법 시행 이후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금융기관과의 신규 금융 거래 시 채무의 만기일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에너지 분야 기관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기존 대통령령 제13662호는 OFAC Directive 2을 통해 ① 미국인이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기관과 i) 신규 채무 거래, ii) 자금 제공하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은 거래가 ②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재 대상 거래로 인식되었습니다. 단, OFAC 라이선스⁶를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한편, 제재 통합법은 러시아 에너지 분야 기관과의 채권채무 거래와 관련한 주체를 ① 미국인 또는 ② 미국 내 소재자(단, OFAC 라이선스 취득자 예외)로 변경하였으며,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분야 기관과의 신규 금융 거래 시 채무 만기일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강화

⁵ 제재 통합법은 '미국 내 소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소재 개인, 기업, 단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⁶ OFAC은 법률에 의해 금지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즉, OFAC의 승인에 의해 라이선스가 발급된 경우 미국인이 SSI 목록에 포함된 제재대상자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OFAC에 제출하여야 하며, OFAC의 심사를 거쳐 발급가능 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기존 대통령령 제13662호는 OFAC Directive 4를 통해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러시아 영토/영해 내에서 수행하는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 관련 상품, 서비스(금융 서비스 제외), 기술을 미국인이 지원하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재 통합법 하에서는 거래 주체가 ① 미국인 또는 ② 미국 내 소재자(단, OFAC 라이선스 취득자 예외)로 변경되었고, 제재요건도 러시아 영토/영해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3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심해, 북극해안, 세일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품, 서비스(금융 서비스 제외), 기술을 제공, 수출,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즉, 종전에는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러시아 영토 및 영해 내에서 수행하는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만 제재 대상이었으나, 제재 통합법의 시행으로 러시아 역외에서 추진되는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3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품, 서비스, 기술의 제공, 수출, 재수출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5) 제재 통합법 제223조 각 규정 비교

	§ 223 (a) [철도]	§ 223 (b) [금융서비스 분야의 금융거래]	§ 223 (c) [에너지 분야의 금융거래]	§ 223 (d) [석유 개발·생산]
취지	러시아 국유기업이 운영하는 철도 분야 신규 반영함.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금융서비스 기관과 신규 금융 거래 시, 채무 만기일 단축을 통해 그 제재를 강화함.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기관과 신규 금융 거래 시, 채무 만기일 단축을 통해 그 제재를 강화함.	프로젝트의 수행지역이 러시아 영토 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33%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신규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기술의 제공, 수출, 재수출을 금지함.

적용 시점	법률 시행일	법률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Directive 1 개정 이후 적용.	법률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Directive 2 개정 이후 적용.	법률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Directive 4 개정 이후 적용.
거래 주체	N/A	미국인 혹은 미국 내 소재한 자. 단, OFAC 라이선스 취득한 경우 예외.	미국인 혹은 미국 내 소재한 자. 단, OFAC 라이선스 취득한 경우 예외.	미국인 혹은 미국 내 소재한 자. 단, OFAC 라이선스 취득한 경우 예외.
개정 내용	N/A	위 거래주체가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금융서비스 기관과 i) 신규 채무 거래, ii) 자금 제공, iii) 신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채무의 만기일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	위 거래 주체가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기관과 i) 신규 채무 거래, ii) 자금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의 만기일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	위 거래주체가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3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심해, 북극해안, 셰일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품, 서비스(금융 서비스 제외), 기술의 제공, 수출, 재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외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위 요건을 갖춘 경우 금지.

② 정보 및 방위 분야 관련 제재

제재 통합법에 신규로 도입된 규정으로 동 법에 따르면 러시아군 총정보국(GRU),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을 포함한 러시아연방의 정보 또는 방위 분야 기관에서 활동하거나 그에 소속된 자(Person⁷)와 중요 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은 제재를 하여야 합니다. 제재 통합법은 동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러시아 연방정부의 정보 또는 방위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그에 소속된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 및 방위 분야 제재는 앞서 금융 서비스 분야 금융 거래, 에너지 분야 금융 거래, 석유 개발·생산 관련 지원에서 거래의 주체를 미국인 또는 미국 내 소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요 거래를 하는 자로 규정하여 보다 확장된 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③ 러시아 연방 내 수출용 에너지(Energy) 파이프라인 개발 관련 제재

제재 통합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과 협력하여 시가 기준으로 USD 1,000,000 이상 또는 12개월의 기간에 걸쳐 USD 5,000,000 이상을 i) 수출용 에너지 파이프라인 관련 러시아 연방의 능력(ability) 향상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저하게 기여하는 투자를 하는 자 또는 ii) 러시아 연방의 수출용 에너지 파이프라인 건설의 유지 및 확장, 현대화, 수리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저하게 용이하게 하는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지원의 판매, 대여, 제공하는 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러시아 국유 자산의 민영화에 대한 투자 제재

⁷ 제재 통합법 제221조 정의조항에 따르면, 'Person'은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The term 'person' means an individual or entity.). 동 법 제231조에서는 동 법 적용 거래주체를 미국인 또는 미국 내 소재자로 한정하지 않고 'Person'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재 통합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① USD 10,000,000 이상(12개월의 기간에 걸쳐 행해진 투자 중 투자금액이 USD 1,000,000 이상인 각 투자를 합산하여 그 총액이 USD 10,000,000 이상 되는 경우 포함)을 투자하거나 또는 ② 그러한 투자를 용이(facilitate⁸)하게 하는 자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투자가 러시아정부의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불공정한 이익(unjust benefits)을 제공할 의미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저하게 러시아 국유재산의 민영화 능력에 기여하여야 제재 요건이 충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⑤ 통합 제재법 위반 시 법적 책임

1) 민형사상 처벌

제재 통합법에 따르면 동 법 제223조(대통령령 제13662호 개정) 제231조(정보 및 방위 분야 관련 제재)와 관련하여 ① 동 법을 위반 하거나, ② 위반을 시도하거나, ③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액수는 거래액의 2배 또는 거래액이 USD 250,000 미만인 경우에는 USD 250,00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 조항을 ① 고의로 위반, ② 고의로 위반 시도, ③ 고의로 위반 공모 또는 ④ 고의로 타인의 위반을 방조한 자에 대해 그 행위로 인해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최대 USD 1,000,000의 벌금 및 최대 2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동 조 적용 거래주체인 미국인 또는 미국 내 소재자 뿐 아니라 이들에게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자, 이들과 고의로 위반을 공모한 자, 고의로 이들의 위반을 방조한 자도 처벌하게 됨으로, 처벌 대상 범위가 확대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⁸ 본 제재 통합법에서는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facilitate investment)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다른 경제 제재법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사무, 보고는 투자를 촉진하는 행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행정처분

제232조(러시아 연방 내 에너지 파이프라인 개발 관련 제재)와 제233조(러시아 국유 자산의 민영화에 대한 투자 제재)의 경우 민형사상 처벌 조항은 부재하고, 제235조(제재)⁹에 따른 행정처분만 부과 됩니다. 한편, 제231조(정보 및 방위 분야 관련 제재)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제235조에 따른 제재처분도 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한편, 제231조(정보 및 방위 분야 관련 제재), 제232조(러시아 연방 내 에너지 파이프라인 개발 관련 제재)와 제233조(러시아 국유 자산의 민영화에 대한 투자 제재)에서 금지하는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은 제2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가지 제재 중 5가지 이상의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⑥ 제재의 종료를 위한 절차

제재 통합법에 따라 제231조(정보 및 방위 분야 관련 제재), 제232조(러시아 연방 내 에너지 파이프라인 개발 관련 제재), 제233조(러시아 국유 자산의 민영화에 대한 투자 제재) 위반으로 제235조의 제재 처분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 제재 종료가 필요한 경우 미국 대통령은 통지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통지서에는 제재 종료에 대한 통지, 제재 종료 사유 및

⁹ ① 미국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 관련 보증, 보험, 신용 연장에 대한 승인 거부 ② 재화와 기술의 수출과 관련하여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경우 승인 거부 ③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12개월 기간 내에 USD 10,000,000 이상의 대출 또는 이를 위한 신용의 제공 금지 ④ 국제금융기관에서 미국의 발언권, 투표권을 사용하여 제재 처분 대상자에 대한 대출 제한 ⑤ 제재 처분 대상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미국정부 채무상품의 1차적 중개인(primary dealer) 지정 금지 또는 미국정부 자금 보유 금지 ⑥ 제재 처분 대상자로부터 조달 금지 ⑦ 제재 처분 대상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미국 내의 외국환거래 금지 ⑧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장의 양도 및 송금 금지 ⑨ 제재 처분 대상자의 미국 관할권 내 소재 재산의 거래 및 권리행사 금지 ⑩ 미국인의 제재 처분 대상자 지분 또는 채무에 대한 투자 금지 ⑪ 제재 처분 대상자의 기업임직원에 대한 미국 내 입국 금지 ⑫ 제재 처분 대상자의 최고임원에 대하여 본 조항에 따른 각종 제재 부과 등 총 12가지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재 처분 대상자가 제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있거나, 해당 행위 중단을 위해 중대한 단계를 이행하였다는 검증 가능한 사실 및 향후 제재 처분 대상자가 제재 대상 행위에 의도적으로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신뢰할 만한 약속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제재 통합법 시행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

러시아 외무부는 2017년 7월 28일 성명을 통해 2017년 9월 1일까지 러시아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과 대사관 소속 기술직원 등의 숫자를 미국 내 주재하는 러시아 대사관의 소속인원과 동일한 수준인 455명으로 줄일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1일부터 미국 대사관이 현재 사용 중인 모스크바 내 창고시설과 별장 등의 사용을 즉각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다른 수단을 통한 추가적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4. 시사점

가. 이전 제재가 집행 중이었던 관계로 단기적으로 제재 통합법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충격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재 통합법으로 인해 철도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어, 조만간 제재 대상자가 선정되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석유 개발·생산과 관련하여서는 러시아 내 프로젝트 뿐 아니라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기업(33% 지분)이 수행하는 러시아 역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미국인 또는 미국 내 소재자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나. 정보 및 방위 분야의 경우에는 제재 대상자들과 '중요 거래하는 자', 러시아 연방 내 수출용 에너지 파이프라인 개발의 경우에는 '투자하는 자',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지원의 판매, 대여, 제공하는 자', 러시아 국유 자산의 민영화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하는 자',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자'로 확대하여, 문언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 미국인 또는 미국 내 소재자로만 적용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 법인(모회사)이 미국 내 설립한 미국 법인(자회사)이 SSI 목록에 포함된 제재 대상자와 금융 서비스, 에너지 분야 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재 대상 거래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한 큰 영향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정보 및 방위 분야, 러시아 연방 수출용 에너지 파이프라인 개발, 러시아 국유자산 민영화 투자의 경우 한국 법인 및 러시아 법인도 통합 제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시 거래 당사자 및 거래 유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 동 법으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13662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이때 처벌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동 조 적용 거래주체인 미국인 또는 미국 내 소재자 뿐 아니라 이들에게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자, 이들과 고의로 위반을 공모한 자, 고의로 이들의 위반을 방조한 자도 처벌하게 됨으로, 처벌 대상을 범위가 확대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동 법의 거래 유형 요건에 대해 '중요 거래',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바, 위반 여부 및/또는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이므로, 위반여부를 포함하여 위험을 측정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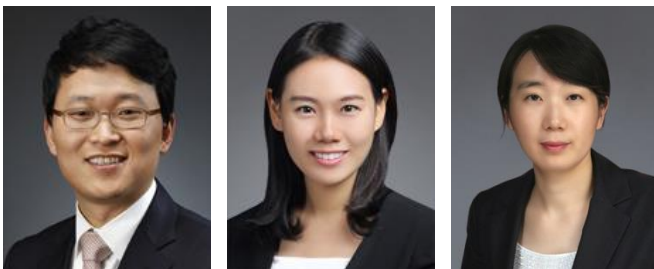
(주)동방선기를 대리하여 중국 내 자회사인 대련동방선기 유한공사의 지분 매각 관련 자문

지평은 (주)동방선기를 대리하여 중국 내 자회사인 대련동방선기 유한공사의 지분 100%를 대련동방금업과기발전 유한회사에 매각하는 거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이투데이 - 동방선기, 자회사 대련동방선기 유한공사 양도 결정\(2017. 4. 7.\)](#)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민희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KDB산업은행을 대리하여 하이난성 하이커우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 투자 자문

지평은 KDB산업은행을 대리하여 중국 일대일로사업 중 하나인 하이난성 하이커우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에 국내 사모펀드 조성을 통한 1억 3천만 달러 투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 산은, 中 일대일로사업에 1.3억달러 투자 참여(2017. 7. 13.)

[담당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우규 변호사



안중성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정승민 외국변호사



최정목 외국변호사



손영 외국변호사

한국 화학기업의 중국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 화학기업의 중국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한국 투자업체의 상해대표처 설립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 투자업체의 상해대표처 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장욱염 외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의 지분 매각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의 지분 매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장욱염 외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한국 운송업체의 중국 소송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 운송업체의 중국 소송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염동 외국변호사 장욱염 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한화테크윈(주)를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 항공기 엔진부품 공장 설립 관련 자문

지평은 한화테크윈(주)를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 항공기 엔진부품 공장 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뉴스 - 한화테크윈, 베트남에 항공기 엔진부품 공장 건립 추진\(2017. 6. 19.\)](#)

[담당 변호사]

유동호 외국변호사 · NGUYEN Thi Huong
하노이 사무소장 외국변호사

NHN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자문

지평은 NHN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서울경제 - NHN엔터 동남아 영토확장...베트남 법인 시동\(2017. 9. 17.\)](#)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BUI Tran Dang Khoa 외국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외국변호사